

의안번호	2216665
의 퇴 인	문금주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5.
추계번호	26C084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5억 9,300만원(연평균 7억 1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상해보험료 지원 (안 제15조의6)	767	742	720	694	670	3,593	7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1항 (아동종합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	의무규정
2	안 제15조의6 (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)	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조제1항 (아동종합실태조사)	×	○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아동종합실태조사¹⁾ 대상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표본크기와 선정 방법, 관련 조사항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- 기존 표본은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표본수 등의 변화에 따라 소요예산은 400백만원('18년) → 600백만원('23년) → 618백만원('26년)으로 증가해왔음 - 개정안 시행으로 표본크기와 조사항목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사원 수, 조사기간 등이 증가할 수 있음
2	안 제15조의6 (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)	△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상해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안 제15조의6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'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'의 [표] 참고)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아동종합실태조사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 및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전국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로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에 한해 1인당 68,500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,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됨
 - －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액은 455백만원('24년) → 458백만원('25년) → 458백만원('26년)
 - (보험료 단가)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게 지원할 상해보험료도 가정위탁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68,500원을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(대상인원) '20~'24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과 아동인구²⁾ 수를 바탕으로 아동인구 수 대비 보호아동 수 평균 비중(0.17%)을 산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보호아동 수를 추계함
- 추계결과,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5억 9,300만 원으로 추계

[표 2]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1인당 상해보험료(원, A)	68,500	68,500	68,500	68,500	68,500	—	—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(명, B)	11,198	10,838	10,506	10,128	9,775	—	—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)	767	742	720	694	670	3,593	7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아동인구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 수를 의미함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